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1. 12. 30(목)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 (전 문 위 원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75호

나. 제 출 자 : 윤영희의원(대표발의), 김경완의원, 조윤형의원, 강수정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기록투표,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나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
- 나.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할 수 있는 근거 명시(안 제11조)
- 다. 표결 시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원칙(안 제47조)
- 라.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른 심사규정 반영 (안 제65조)
- 마.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 및 수리·각하의 심의·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(안 제66조, 제67조)
- 바.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, 의견제출 규정 신설(안 제90조, 제91조, 제9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(의견 없음)

라. 기 타

1) 일부개정 조례안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
5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과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게 된 사항임.

- 안 제12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
- 안 제47조에서는 표결방법에 있어 현행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 조항을 개정 표결에서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조항을 변경하였음.
- 안 제65조에서 제67조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과 이의신청, 수리 및 각하의 심의·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음.
- 안 제90조에서 제92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해촉· 제척·회피와 의견수렴 규정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위임사항인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
○ 본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된 내용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본 규칙 안은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관련 법령 1부.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7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- 제74조(**표결방법**)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 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(可否)를 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 - 1. 제57조에 따른 의장 · 부의장 선거
 - 2.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
 - 3. 제62조에 따른 의장 · 부의장 불신임 의결
 - 4.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
 - 5.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
 - 6. 제32조, 제120조 또는 제121조,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
 - 7.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
- 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84조(회의록)**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 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 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[시행 2022 1. 13.] [법률 제18495호 2021. 10. 19., 제정]

제11조(이의신청 등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
- 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- 3.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
- 4.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- 5.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
- 6.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
- 7. 강요 ·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
-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·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이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,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,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 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.
- 1. 시·도: 15일 이상
- 2. 시 · 군 및 자치구: 10일 이상
-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,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 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"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"은 "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"으로 본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

- 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- 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 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